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산물 안전 및 위생관리 강화를 위하여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1개 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3명(4급 1명, 6급 1명, 7급 1명) 중 1명(4급 1명)은 해양수산부의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고, 2명(6급 1명, 7급 1명)은 증원하며, 해양수산부에 디지털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및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임용 등 인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6급 1명, 7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미국 수출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수산물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수출확인증명서 발급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6급 1명, 7급 3명)을 증원하고,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에 따라 청사의 관리 및 정주여건 개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7명(4.5급 1명, 5급 2명, 6급 2명, 7급 2명)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는 내용으로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호, 2025. 12. 31. 공포·2026. 1. 1.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해양수산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수산물과학원에 수산동물 질병 진단 표준물질 기술검증 및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연구사 2명)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호, 2025. 12. 31. 공포·2026. 1. 1. 시행)됨에 따라 변경

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수산물 안전 및 위생관리 강화를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수산물안전정책과를 신설하고, 해양수산부의 효율적인 조직·인력의 운영 및 업무 수행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해양수산부의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4급 1명)하고, 해양수산부 하부조직의 분장 사무 일부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5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의 :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신·구조문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5항제4호 중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제13호까지,”를 “제11호까지, 제13호 및”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11조제3항제53호”를 “제11조제3항제12호, 제53호”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수산정책과·유통정책과·수출가공진흥과·소득복지과·원양산업과·수산직불제팀·어업정책과·수산자원정책과·지도교섭과·어선안전정책과·어촌양식정책과·양식산업과 및 어촌어항과를 두되, 수산정책과장·유통정책과장·수출가공진흥과장·소득복지과장·원양산업과장·어촌양식정책과장·양식산업과장 및 어촌어항과장”을 “수산정책과·유통정책과·수출가공진흥과·소득복지과·원양산업과·수산직불제팀·어업정책과·수산자원정책과·지도교섭과·어선안전정책과·어촌양식정책과·양식산업과·어촌어항과 및 수산물안전정책과를 두되, 수산정책과장·유통정책과장·수출가공진흥과장·소득복지과장·원양산업과장·어촌양식정책과장·양식산업과장·어촌어항과장 및 수산물안전정책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제7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2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⑳ 수산물안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해양수산 부문의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2. 수산물의 식품안전사고 대응에 관한 사항
 3.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4. 수산물 안전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항
 5. 수산물 위해정보 공유를 위한 양방향 소통 체계의 개발
 6. 수산물안전정보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양식장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수산물 생산해역의 위생 관리에 관한 사항
 9. 지정해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10. 수산물 위생관리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1. 수출 수산물의 안전관리 지원과 수출상대국의 위생안전 정보의 수집·관리
 12. 수출 수산물의 위생안전 부적합품에 대한 원인규명 및 조사
 13. 수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검사 관련 제도의 운영
 14. 수산물의 검정 관련 제도의 운영
 15. 국제식품규격위원회의 수산물에 관한 사항
 16. 수산물 및 그 가공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제도의 운영
 17.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 제도의 운영
- 제12조제5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수출확인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

제14조제2항제11호부터 제17호까지를 각각 제12호부터 제18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수출확인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

제22조제8항제16호 중 “해수육장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선조치 요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3호 중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으로 하며, 같은 항 제24호 중 “조건불리지역 및 경영이양”을 “조건불리지역, 경영이양, 소규모어가 및 어선원”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26호 및 제2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6. 수족관 허가 등에 관한 사항

27. 무인도서 점검 및 출입허가 등에 관한 사항

제41조제3항 중 “2명(5급 1명, 6급 1명)”을 “2명(5급 1명, 6급 1명) 및 디지털 홍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으로 한다.

제46조에 제21항 및 제2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㉑ 청사 관리 및 정주 여건 관리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별표 31에 따른 한시정원을 해양수산부에 둔다.

㉒ 수산동물 질병 진단 표준물질 기술검증 및 품질관리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별표 31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립수산물과학원에 둔다.

별표 16 중 총계 “603”을 “608”로 하고, 일반직 계 “599”를 “604”로 하며,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31”을 “32”로,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해양수산사무관 · 시설사무관 · 공업사무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 “57”을 “56”으로, 행정사무관 · 해양수산사무관 · 시설사무관 · 공업사무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 환경사무관 · 방재안전사무관 · 식품위생사무관 · 수의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연구관 “197”을 “198”로, 행정주사 · 해양수산주사 · 시설주사 · 공업주사 · 전산주사 · 방송통신주사 · 환경주사 · 방재안전주사 · 운전주사 또는 해양수산연구사 “208”을 “210”으로, 행정주사보 · 해양수산주사보 · 시설주사보 · 공업주사보 · 전산주사보 · 방송통신주사보 · 환경주사보 · 방재안전주사보 · 운전주사보 또는 해양수산연구사 “32”를 “34”로 한다.

별표 17 중 총계 “609”를 “614”로 하고, 일반직 계 “605”를 “610”으로 하며,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31”을 “32”로,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해양수산사무관 · 시설사무관 · 공업사무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 “57”을 “56”으로, 행정사무관 · 해양수산사무관 · 시설사무관 · 공업사무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 환경사무관 · 방재안전사무관 · 식품위생사무관 · 수의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연구관 “208”을 “209”로, 행정주사 · 해양수산주사 · 시설주사 · 공업주사 · 전산주사 · 방송통신주사 · 환경주사 · 방재안전주사 · 운전주사 또는 해양수산연구사 “199”를 “201”로, 행정주사보 · 해양수산주사보 · 시설주사보 · 공업주사보 · 전산주사보 · 방송통신주사보 · 환경주사보 · 방재안전주사보 · 운전주사보 또는 해양수산연구사 “36”을 “38”로 한다.

별표 18 중 총계 “324”를 “328”로 하고, 일반직 계 “324”를 “328”로 하며, 행정주사·해양수산주사·전산주사 또는 공업주사 “84”를 “85”로, 행정주사보·해양수산주사보·전산주사보·운전주사보·방호주사보 또는 공업주사보 “87”을 “90”으로 한다.

별표 18의2 중 총계 “324”를 “328”로 하고, 일반직 계 “324”를 “328”로, 행정주사·해양수산주사·전산주사 또는 공업주사 “85”를 “86”으로, 행정주사보·해양수산주사보·전산주사보·운전주사보·방호주사보 또는 공업주사보 “86”을 “89”으로 한다.

별표 29 제1호가목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수산정책실 수산물안전정책과	2명 (6급 1명, 7급 1명)	2028년 12월 31일까지
----------------	----------------------	-----------------

별표 31에 제18호, 제1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제46조제21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8년 12월 31일)		
총계		7
일반직 계		7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시설사무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		1
행정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2
행정주사·해양수산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 또는 공업주사		2

행정주사보·해양수산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방송통신주사보 또는 공업주사보	2
19. 제46조제22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7년 12월 31일)	
총계	2
일반직 계	2
해양수산연구사 또는 환경연구사	2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4. 가. 4)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의 4. 나.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② 항만공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해양정책실) ① ~ ⑭ (생략)	제7조(해양정책실) ① ~ ⑭ (현행과 같음)
⑮ 해양생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⑮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운용	4. <u>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u> ----- -----
5. ~ 16. (생략)	5. ~ 16. (현행과 같음)
⑯ ~ ⑲ (생략)	⑯ ~ ⑲ (현행과 같음)
제8조(수산정책실) ①·② (생략)	제8조(수산정책실)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수산정책관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 제3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 제13호의2부터 제13호의7까지, 제14호부터 제33호까지 및 제33호의2부터 제33호의8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③ ----- ----- <u>제11호까지, 제13호 및</u> ----- ----- -----.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어촌양식정책관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3항제53호부터 제69호까지, 제69호의2, 제70호부터 제73호까지, 제73호의2, 제74호부터	⑤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u>제11조제3항제12호, 제53호</u> ----- ----- -----

제76조까지, 제76호의2, 제76호의3 및 제77호부터 제81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⑥ 수산정책실에 수산정책과·유통정책과·수출가공진흥과·소득복지과·원양산업과·수산직불제팀·어업정책과·수산자원정책과·지도교섭과·어선안전정책과·어촌양식정책과·양식산업과 및 어촌어항과를 두되, 수산정책과장·유통정책과장·수출가공진흥과장·소득복지과장·원양산업과장·어촌양식정책과장·양식산업과장 및 어촌어항과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어업정책과장·수산자원정책과장·지도교섭과장·어선안전정책과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하며, 수산직불제팀은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해양수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⑦ (생략)

----.

⑥ ----- 수산정책과·유통정책과·수출가공진흥과·소득복지과·원양산업과·수산직불제팀·어업정책과·수산자원정책과·지도교섭과·어선안전정책과·어촌양식정책과·양식산업과·어촌어항과 및 수산물안전정책과를 두되, 수산정책과장·유통정책과장·수출가공진흥과장·소득복지과장·원양산업과장·어촌양식정책과장·양식산업과장·어촌어항과장 및 수산물안전정책과장-----

-----.

⑦ (현행과 같음)

⑧유통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6. (생략) 7. <u>수산물 원산지 표시 관련 법령의 제·개정 등에 관한 사항</u> 8. <u>삭제</u> 9. ~ 24. (생략) ⑨ ~ ⑱ (생략) <u><신설></u>	⑧----- -----. 1. ~ 6. (현행과 같음) <u><삭제></u> 9. ~ 24. (현행과 같음) ⑨ ~ ⑱ (현행과 같음) ⑳ <u>수산물안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1. <u>해양수산 부문의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u> 2. <u>수산물의 식품안전사고 대응에 관한 사항</u> 3. <u>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u> 4. <u>수산물 안전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항</u> 5. <u>수산물 위해정보 공유를 위한 양방향 소통 체계의 개발</u> 6. <u>수산물안전정보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항</u> 7. <u>양식장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제도의 운영에</u>
---	--

제12조(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① ~ ③ (생략) ④ <u>삭제</u>	<u>관한 사항</u> 8. <u>수산물 생산해역의 위생 관리에 관한 사항</u> 9. <u>지정해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u> 10. <u>수산물 위생관리 관련 국제 협력에 관한 사항</u> 11. <u>수출 수산물의 안전관리 지원과 수출상대국의 위생안전 정보의 수집·관리</u> 12. <u>수출 수산물의 위생안전 부적합품에 대한 원인규명 및 조사</u> 13. <u>수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검사 관련 제도의 운영</u> 14. <u>수산물의 검정 관련 제도의 운영</u> 15. <u>국제식품규격위원회의 수산물에 관한 사항</u> 16. <u>수산물 및 그 가공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제도의 운영</u> 17. <u>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 제도의 운영</u> 제12조(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① ~ ③ (현행과 같음)
---	---

⑤ 검역검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4. (생 략) <u><신 설></u> ⑥ ~ ⑧ (생 략) 제14조(지원) ① (생 략) ② 지원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0. (생 략) <u><신 설></u> 11. ~ 17. (생 략) 제22조(지방해양수산청) ① ~ ⑦ (생 략) ⑧ 해양수산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5. (생 략) 16. 해수욕장시설 점검 및 <u>해수욕장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u> 17. ~ 22. (생 략) 23. <u>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u> (배타적경제수역 및 국가관리구역항에 한정한다)	⑤ ----- -----. 1. ~ 14. (현행과 같음) 15. <u>수출확인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u> ⑥ ~ ⑧ (현행과 같음) 제14조(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10. (현행과 같음) 11. <u>수출확인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u> 12. ~ 18. (현행 제11호부터 제17호까지와 같음) 제22조(지방해양수산청)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 -----. 1. ~ 15. (현행과 같음) 16. ----- <u>개선 조치 요청</u> 17. ~ 22. (현행과 같음) 23. <u>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u> ----- ----- -----
--	--

24. <u>조건불리지역 및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의 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u> 25. (생 략) <u><신 설></u> <u><신 설></u> ⑨ ~ ⑮ (생 략) 제41조(해양수산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② (생 략) ③ 해양수산부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제46조(한시정원) ① ~ ③ 삭제 ④ ~ ⑮ (생 략) ⑯ 삭제 <u><신 설></u>	24. <u>조건불리지역, 경영이양, 소규모어가 및 어선원</u> ----- ----- 25. (현행과 같음) 26. <u>수족관 허가 등에 관한 사항</u> 27. <u>무인도서 점검 및 출입허가 등에 관한 사항</u> ⑨ ~ ⑮ (현행과 같음) 제41조(해양수산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6급 1명), 디지털 홍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 --. 제46조(한시정원) ④ ~ ⑮ (현행과 같음) ⑯ <u>청사 관리 및 정주 여건 관리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별표 31에 따른 한시정원을 해양수산부에 둔다.</u>
---	---

<신 설>	㉔ 수산동물 질병 진단 표준물질 기술검증 및 품질관리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별표 31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립수산물과학원에 둔다.
-------	--

신·구정원대비표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6]
해양수산부 공무원 정원표(제41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603	608	+5
일반직 계	599	604	+5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31	32	+1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 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시설 사무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 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	57	56	-1

행정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 시설사무관·공업사무관·전산 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환경 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식품 위생사무관·수의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연구원	<u>197</u>	<u>198</u>	+1
·	·	·	
행정주사·해양수산주사·시설 주사·공업주사·전산주사·방 송통신주사·환경주사·방재안 전주사·운전주사 또는 해양수산연구사	<u>208</u>	<u>210</u>	+2
행정주사보·해양수산주사보· 시설주사보·공업주사보·전산 주사보·방송통신주사보·환경 주사보·방재안전주사보·운전 주사보 또는 해양수산연구사	<u>32</u>	<u>34</u>	+2
·	·	·	
·	·	·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7]

해양수산부 공무원 정원표(제41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 <u>609</u>	· <u>614</u>	+5
·	·	·	
·	·	·	
일반직 계	<u>605</u>	<u>610</u>	+5
·	·	·	
·	·	·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u>31</u>	<u>32</u>	+1
·	·	·	
·	·	·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 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시설 사무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 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	<u>57</u>	<u>56</u>	-1
·	·	·	
·	·	·	

행정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 시설사무관·공업사무관·전산 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환경 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식품 위생사무관·수의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연구관 ·	<u>208</u>	<u>209</u>	+1
행정주사·해양수산주사·시설 주사·공업주사·전산주사·방 송통신주사·환경주사·방재안 전주사·운전주사 또는 해양수산연구사	<u>199</u>	<u>201</u>	+2
행정주사보·해양수산주사보· 시설주사보·공업주사보·전산 주사보·방송통신주사보·환경 주사보·방재안전주사보·운전 주사보 또는 해양수산연구사 · ·	<u>36</u>	<u>38</u>	+2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8]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공무원 정원표(제42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총계	<u>324</u>	<u>328</u>	+4
일반직 계	<u>324</u>	<u>328</u>	+4
·	·	·	
·	·	·	
행정주사·해양수산주사·전산 주사 또는 공업주사	<u>84</u>	<u>85</u>	+1
행정주사보·해양수산주사보· 전산주사보·운전주사보·방호 주사보 또는 공업주사보 · ·	<u>87</u>	<u>90</u>	+3
·	·	·	
·	·	·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8의2]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공무원 정원표(제42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총 계	<u>324</u>	<u>328</u>	+4
일반직 계	<u>324</u>	<u>328</u>	+4
·	·	·	
·	·	·	
행정주사·해양수산주사·전산 주사 또는 공업주사	<u>85</u>	<u>86</u>	+1
행정주사보·해양수산주사보· 전산주사보·운전주사보·방호 주사보 또는 공업주사보	<u>86</u>	<u>89</u>	+3
·	·	·	
·	·	·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29]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제44조의3
관련)

1. 해양수산부

가. 평가대상 조직

조 직	정 원	평가기간
해운물류국 항만안전보안과	1명 (4급 1명)	2026년 12월 31일까지
수산정책실 수산물안전정책과	<u>2명</u> (6급 1명, 7급 1명)	<u>2028년 12월 31일까지</u>

나. 평가대상 정원

업무	정 원	평가기간
어선원의 안전·보건에 관 한 정책 수립 및 총괄 업무	2명 (5급 1명, 7급 1명)	2027년 12월 31일까지

2. 해양수산부 소속기관

가. 평가대상 정원

업무	정 원	평가기간
어선원의 안전·보건 감독 업무	31명 (6급 31명)	2027년 12월 31일까지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31]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 한시정원표(제46조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1~17. (생략)	1~17. (현 행과 같 음)	·	
18. 제46조제21항 관련 한시정원 (존속기한: 2028년 12월 31일)	<신 설>	18. 제46 조제21항 관련 한 시정원 (존속기 한: 2028 년 12월 3 1일)	
총계	<신 설>	7	+7
일반직 계	<신 설>	7	+7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 행정 사무관 · 해양수산사무 관 · 시설사무관 · 공업사무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신 사무관 · 방재안전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	<신 설>	1	+1

행정사무관 · 해양수산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 방재안전사무 관 또는 공업사무관	<신 설>	2	+2
행정주사 · 해양수산주사 · 시설 주사 · 전산주사 · 방송 통신주사 또는 공업주사	<신 설>	2	+2
행정주사보 · 해양수산주사보 · 시설주사보 · 전산주사보 · 방송통신주사보 또는 공업주사보	<신 설>	2	+2
19. 제46조제22항 관련 한시정원 (존속기한: 2027년 12월 31일)	<신 설>	19. 제46 조제22항 관련 한 시정원 (존속기 한: 2027 년 12월 3 1일)	
총계	<신 설>	2	+2
일반직 계	<신 설>	2	+2

해양수산연구사 또는 환경연구사	<u><신 설></u>	<u>2</u>	
---------------------	--------------------	----------	--